(건축-006) 공동주택 신축현장 방호선반위 작업 중 추락사고

공사명	○○지구 B8블록 ○○○○ 공동주택 신축공사				
사고일시	2019년 6월 6일(목) 16:10분경		기상상태	맑음	
소재지	부산시 기장군	사고 종류	추락		
구조물 손실	-	인적피해	사망 2명	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〇)	, 해당없음()	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공사종류 : 공동주택

○ 공사면적: 건축면적 44,390㎡, 연면적 79,705㎡

○ 공사규모 : 지하 2층, 지상 26층, 550세대

○ 공사기간 : 2017.10~2020.6

2) 사고경위

○ 805동 1,2호 세대 1층 엘리베이터(E/V)홀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인부 2명이 청소작업을 하던 중, 방호선반이 붕괴되면서 1층에서 지하2층으로 추락

3) 사고원인

- E/V홀에 설치된 방호선반은 상부에서 작업시 떨어지는 낙하물을 차단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으며, 작업인부는 출입이 불가한 가설구조물임
- 방호선반을 지지하는 하부목재의 고정용 콘크리트 못이 작업자 2명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빠지면서 방호선반과 작업자가 동시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

나. 재발방지대책

○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,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


